# 소규모 합병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(주)텔콘제약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 당사회사
   - 존속법인: ㈜텔콘
   - 해산법인: ㈜텔콘제약(본점 소재지: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1로 120)
2. 합병방법 : (주)텔콘이 (주)텔콘제약을 흡수합병 함
3. 합병비율
   - (주)텔콘 : (주)텔콘제약 = 1.000000 : 0.000000
4. 합병기일: 2018년 5월 11일
5. 소규모 합병: 합병회사인 (주)텔콘은 피합병회사인 (주)텔콘제약의 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.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 가. 행사절차: 2018년 3월 23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   나. 제출기간: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4월 8일 까지
  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   1) 명부주주: 2018년 4월 8일까지 당사 경영기획부에 제출(전화번호: 02-515-8808)
      2) 실질주주: 2018년 4월 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  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  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---

**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**

주식회사 텔콘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(주)텔콘과 (주)텔콘제약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

| 주 주 번 호 | | 주 주 명 | |
|---|---|---|---|
| 소유주식의 종류 | | 소유주식수 | |

2018 년 월 일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**2018년 3월 22일**

**주식회사 텔콘**

**대표이사 김 지 훈**